

# 농촌진흥청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



최규철 사무총장

몇 해 전부터 양봉 농가를 비롯한 다른 품목별(농·축업) 생산 농가들이 시·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의 전담 공무원의 지도하에 연구회를 결

성하여 여러 가지 생산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.

이러한 시·군 단위 연구회를 바탕으로 진흥청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거대 시·군 단위 연구모임을 결성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고,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시하여 농·축업의 품목별 민간단체와 농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.

진흥청산하 농업기술센터의 연구회는 본래 정보공유 및 교육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연구회에서 연구모임으로 그 기능을 확대 해석해 가고 있고, 연구모임의 명분으로 진흥청이 앞장서서 중앙회와 연합회를 구성, 이에 따른 기관별 부서 설치 및 총괄 책임자 임명 등 또 하나의 생산자 단체를 결성하여 농민단체가 이원화가 된다면 가뜰이나 어려운 농가들에

게는 이중의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이다.

지금 농업의 국내정서를 보면 농가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살기 어려운데 또 다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빠져나온다면 정부는 과연 어느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,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지, 농가의 분열된 모습에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.

이미 각 품목별 농업인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을 대표할 거대한 농민단체를 갖추고 있으며, 이 단체로 인해 농가의 입지가 굳어지고, 진취적인 자세로 더욱 발전하는 농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사냥꾼은 결코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농가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.

현재 농림부산하 전국 농업·축산업 품목별 민간단체는 40여개가 되며 자율적으로 농가들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, 선진국 및 참여정부에서도 정부사업 등을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.

그러나 현재 민간단체에서 대 정부를 상대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데, 진흥청 기관에서 또 다른 연구모임의 조직 결성을 지원한다

는 것은 참여정부의 시책에도 맞지 않고, 이 중의 예산이 소요 것이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. 특히 본 협회는 40년 전부터 양봉농가를 위해 정부 시책과 자체 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, 전국 15개 시·도 지회와 205개 시·군 분회로 조직을 세분화시켜 운영했으나,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시행하는 품목별 양봉연구회로 인해 본 협회의 시·도 지회 및 시·군 분회 조직이 와해되어 본 협회 회원과 연구회 농가간의 갈등과 지역 간 의견충돌 및 사업을 이중으로 건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, 본 협회에서는 가능하면 협회조직 및 민간단체의 대표성이 있는 분회장이 연구회 회장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.

이는 비단 양봉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생산 품목별 단체 회원 및 농가에 해당하는 문제로 자칫 잘못하면 전국 농업·농촌이 와해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,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가 한데 모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.

현재 본 협회를 비롯한 품목별 생산 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함께 대책회의(8월11일)를 갖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 방문한 바 있고, 연구모임 결성 규정에 품목별 민간단체의 시·도·군 단체장이 겸직하도록 하는 제도(규정)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구모임이 되기를 건의하고 기대하고 있다.

### 진흥청에서 제시한(안)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

#### 1. 제정이유

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을 농촌지도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농촌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 활동함(안 제2조)
- 나. 연구모임은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 배양 및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(안 제3조)
- 다. 연구모임의 명칭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품목별 시군단위 연구회, 품목별 도단위 연합회, 품목별 중앙단위 연합회 등으로 조직함(안 제4조)
- 라. 연구모임의 체계적인 조직, 운영 등을 위하여 육성위원회를 두며, 총괄부서와 전담부서 등을 지정하여 운영함(안 제6조, 제9조)